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52

발의연월일: 2022. 6. 27.

발 의 자:조수진·김영식·김용판

배준영 · 강대식 · 조경태

윤창현 • 김상훈 • 유상범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(총금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0분의 12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. 4%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,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경 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0%에서 12%로,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%에서 15%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

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12"로, "100분의 12" 를 "100분의 1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	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
제)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	제) ①
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	
주(세대주가 이 항, 제87조제2	
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	
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	
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	
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로	
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	
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	
있는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에	
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	
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	
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	
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	
액의 <u>100분의 10</u> [해당 과세기	<u>100분의 12</u>
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	
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	
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	
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	

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조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2]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②・③(생략)

<u>100분의 15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